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36

발의연월일: 2020. 8. 31.

발 의 자: 박재호 · 전재수 · 최인호

김정호・허 영・김수흥

한병도 · 김경협 · 정춘숙

박용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연평균 3,075건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의 성범죄, 절도,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·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, 서울, 부산 등의 도시철도는 범죄 예방·신고, 질서유지 및 화재·테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"지하철보안관"을 자체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, 제도 운영에따른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통의 배치·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

모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요원을 배치·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보안요원의 배치·운영)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안요원의 배치・운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보안요원을 배치·운영하지 아니한 도시철 도우영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안요원의 배치·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면허의 취소 등) ① 시ㆍ	제37조(면허의 취소 등) ①
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	
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	
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	
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	
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	
취소하여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의2.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
	여 보안요원을 배치 · 운영하
	지 아니한 경우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1조의2(보안요원의 배치・운
	영)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
	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
	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
	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
	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보안요원의
	배치・운영 기준은 국토교통부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u>1. · 2.</u> (생 략)

③ (생 략)

령으로 정한다.

- ② ------
- _____
- 1.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보안

 요원을 배치・운영하지 아니

 한 도시철도운영자
- 2.·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